#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8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김경협·서영석·정춘숙

양향자 · 김승원 · 김정호

박영순 · 최인호 · 박성준

강병원 · 윤재갑 · 정성호

송옥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저율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20세 이상인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민간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시 서민·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조합법인이 실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인바,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20세 이상인 거

주자로 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03.07)으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변경된 점,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대상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나이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을 각각 "202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세"를 "19세"로, "2020년"을 "2023년"으로, "2021년"을 각각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0년</u> 12월 31일 이전	<u>2023년</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u> 1월 1일부터 <u>2021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u>2022년</u>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u>2023</u>
년
1. <u>2024년</u> <u>2024년</u>
2. <u>2025년</u>
2. <u>2025년</u>
2. <u>2025년</u>  ll 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2. <u>2025년</u>
2. <u>2025년</u>  ll 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2. <u>2025년</u> 1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2. <u>2025년</u> 1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2. <u>2025년</u> 1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2. <u>2025년</u> 1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2023년</u>
	<u>2</u>
<u>024년</u>	<u>2024년</u>
② 2025년	